

##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34
----------	-----------

제출연월일	2007. 9. 21.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정이유

우리 군의 노인·여성·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거창군 삶의 쉼터 “노인·여성·장애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 명칭 : 거창군 삶의 쉼터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41-1번지

나. 주요시설(안 제4조)

-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별 주요시설 규정

다. 주요사업내용(안 제5조)

-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 상담, 노인교육, 노인복지증진사업 등
- 여성복지사업 : 여성문제 상담, 취미·소양교육, 여성복지증진사업 등
-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활치료, 장애인복지증진사업 등

라. 운영(안 제6조)

- 군수가 직접 운영 또는 필요시 위탁운영 가능  
⇒ 위탁운영계약시 기간 : 3년 이내, 재위탁 가능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가능

마. 기구 및 인원(안 제7조)

-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
- 위·수탁의 경우 관장 및 사무국장 임명은 사전에 군수 승인

바. 시설의 사용료(안 제8조)

-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사. 수탁자의 의무(안 제9조)

- 수탁 시설의 선량한 관리 등 의무 명시

아. 위탁의 정지 및 취소(안 제10조)

- 수탁자 의무 위반, 협약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경우,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 발생 등
- 수탁자 책임으로 정지 및 취소시 시설 운영에 사용한 모든 비품은 거창군으로 귀속

자. 손해배상(안 제11조)

- 시설 및 비품 훼손 또는 망실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차. 준용(안 제12조)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준용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노인복지법」 제37조·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9조·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

나. 예산조치 : 2008년도 예산에 반영 계획임

다. 그 밖에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입법예고(2007. 8. 28. ~ 9. 16.) 결과 : 의견 없음

##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노인·여성·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넓은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창군 삶의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이 시설의 명칭은 “거창군 삶의 쉼터”라 한다.

②위치는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41-1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삶의 쉼터”란 거창군노인복지회관, 거창군여성복지회관, 거창군장애인복지관을 통칭함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군수가 상호 계약에 따라 삶의 쉼터의 운영과 책임을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맡겨 수탁자의 명의로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이란 군수로부터 삶의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주요시설) ①삶의 쉼터는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으로 구분하여 설치·운영한다.

②노인복지회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무실, 강당(대·소), 회의실, 생활·건강상담실
2. 주간보호센터, 건강교실, 체력 단련실, 이·미용실
3. 장기·바둑실, 노래연습장, 다목적휴게실, 식당
4. 그 밖에 노인 복지를 위한 시설

③여성복지회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여성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요리교실, 취미교실
2. 자원봉사자실

3. 여성상담실, 인터넷실
4. 그 밖에 여성복지를 위한 시설

④장애인복지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수 치료실, 식당, 상담실, 목욕탕
2. 체력단련실, 진료실,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3. 사회교육실, 통합사무실, 보호 작업장
4. 컴퓨터교실, 자원봉사자실, 녹음도서실, 강당
5.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설

**제5조(주요사업내용)** 삶의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 상담, 노인에 대한 교육·교양·여가 및 취미에 관한 사업,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2. 여성복지사업 : 여성문제 상담, 여성 취미 및 소양교육, 여성단체 활동 및 자원봉사 지원사업, 그 밖에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활치료, 사회교육, 심리·언어 치료사업,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6조(운영)** ①삶의 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삶의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삶의 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사업실적, 자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재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월전까지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시 특약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기구 및 인원)** ①삶의 쉼터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은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구 및 인원을 구성하되 관장 및 사무국장의 임명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①삶의 쉼터의 사용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6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운영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점검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한 재산을 재임대하거나 수탁자의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수탁기간의 만료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3월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결산서는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5.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약 해지를 합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수탁시설 관리·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거창군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와 그 귀속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삶의 쉼터의 시설 또는 비품 등을 망실, 훼손하였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를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신청서

신 청 자	법인명칭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위·수탁 운영기간				
위·수탁 관리목적				

위와 같이 거창군 삶의 쉼터(노인·여성·장애인복지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자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의 정관 1부.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명칭 :  
대 표 자 : (인)

거창군수 귀하